

「군포도시공사 ESG경영위원회」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
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8월 19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73 호

군포도시공사 ESG 경영위원회 운영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군포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의 ESG 경영 전문성 강화 및 차별화를 위한 ESG 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공사 ESG 경영 자문(교육)에 관한 사항
2. 공사 ESG 경영 심의(검토), 평가(환류)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사 이사회 또는 사장이 요청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되 ESG 분야별 2명 이상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ESG 분야별 전문가 중에 사장이 위촉하되 경영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공사 운영 위원회 위원 중 ESG 분야 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책임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공사 이사회 이사 중에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을 공사 경영시설본부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단, 당연직 위원은 직위 변경에 따른다.

제4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며, 사고가 있을 시에는 호선을 통해 선정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 이사회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 운영에 있어 주요(핵심)사항의 경우 이사회 심의·의결을 요청 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제5조(수당지급)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참석수당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내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박 인 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권 예 희 (3 8 0 - 5 8 1 4)